제823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환경부)	1.“분리 불가능”의 범위 확대 및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기준 추가(강화) ○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분리되더라도 몸체에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단 기준으로 PET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에 대해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등을 추가함	1.비중요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신설) ○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2호) ○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학생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되, 학생 수가 2명 미만인 경우 2명으로 함(안 제9조의3제3호) ○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함(안 제9조의3제4호) ㅇ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갖추고 그 공간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안전벨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름(안 제9조의3제5호)	
3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	1.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안내표지판 비치 또는 설치 의무화(신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안내표지판 비치 또는 설치 의무화	1.비중요
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안전부)	1.엘리베이터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강화(신설) 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2) 1) 엘리베이터의 보상 수단에 대해 고정부 이탈 등으로 인한 체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9.6.4) 2)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기가 작동하여 카를 최인접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진감지기 설치기준을 마련함(16.1.12) 3)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11, 부속서 X Ⅳ) 4)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장의 조도 기준을 강화함(7.7.1,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16) 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개정(안 별표 23) 1) 로봇 탑승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14.6, 부속서 X III)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양돈농가 방역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강화)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멧돼지와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와 축산차량, 사람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하는 것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서·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1.중요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1.비중요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강화) 상호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임	1.비중요
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강화)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의 면적 강화(강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1, 별표2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나목(1)	1.비중요
10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항공기탑재용구 등 항공기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최신의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술표준서 6종 신설(별첨) *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따라 기술표준품의 상호인정이 가능하며, 향후 인증완료 후 FAA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표준서를 동일하게 제정 필요 <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 항목 > 1.KTSO-C90e(항공기탑재용구(팔레트, 컨테이너)) 2.KTSO-C127c(수송급 항공기 좌석) 3.KTSO-C135a(항공기 휠 브레이크) 4.KTSO-C175(갤리카트(Galley Cart)) 5.KTSO-C123c(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6.KTSO-C124c(비행자료기록장치(FDR))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 확대(강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 확대 * △태양광설비의 태양전지(강화), 부대설비(신설)△연료전지설비의 연료전지(강화), 이차전지(강화)△배전선로 전기저장장치(신설) 2.사용전검사 시기 추가(강화)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사용전검사 시기 추가	
1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한(강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한 2.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대상 확대(강화)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 확대 * △태양광설비의 태양전지(강화), 부대설비(신설)△연료전지설비의 연료전지(강화), 이차전지(강화)△비상용예비발전설비(강화) 3.사용전검사 시기 추가(신설) 사용전검사 시기 추가 4.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대상 추가 및 시기 단축(강화)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대상 추가 및 시기 단축 * △(대상추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변전소(4년 이내)△(시기단축) 태양광발전소의부지 및 구조물(4년 → 2년 이내) 5.중대한 사고의 종류 명확화(강화) 중대한 사고의 종류 명확화 * 화재사고(신설), 감전사고(강화), 전기설비사고(추가)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1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원격교육 운영명령 사유(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교육부)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명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시행령안 제3조 제3항) - 학교등의 장이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 하기 곤란한 경우	
14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정안 (환경부)	1.재활용사업자의 투입원료 및 시설기준(신설) o (제4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의 공정을 준수한 원료를 투입해야 함 ①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 ② 별표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페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o (제5조)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별표2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무색 페트병 별도 보관을 위한 실내시설 구축 및 청결하게 관리 ② 파쇄·분쇄시설, 광학선별시설 등 무색 페트병 별도 재활용 설비 구축 ③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식품용 재생원료 품질기준(별표3)을 만족 등 2.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건(신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설) o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15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강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일반구조(제3조 제24호 신설, 제26호 신설)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고온 작동 시험 도입, 용기 개구부의 최소 내경 규정 - 음향장치(제8조 제3호) 시험시간 명시 - 수신부(제11조 제3호) 차단장치 회로 단선 표시 기능 추가 - 결합부 및 밸브 등(제16조 제7호)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 도입 - 지시압력계(제21조 제3호 마목, 제7호, 제8호, 제9호) 진동시험 강화, 파열강도시험 도입, 방수시험 도입, 과압배출시험 도입 - 안전밸브(제22조 제2항 신설) 안전밸브 작동압력 상한 및 하한치 강화 - 소화약제 ● 분말소화약제(제23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신설) 흡습율시험 시험일 강화, 온도상승시험 도입, 절연내력시험 도입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강화액소화약제(제23조 제3항 제3호, 제7호 신설) 금속부식시험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 강화,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 규정 ● 침윤수용액소화약제(제23조 제4항 제3호, 5호 신설) 금속부식시험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 강화,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 규정 ● 포소화약제(제23조 제5항 제8호, 제9호 신설)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 규정, 금속부식시험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 강화 - 기밀시험(제25조 제2호 강화) 기밀시험 상·하한 온도 반복 강화 - 내압시험(제28조 제1항, 제2항 조항분리) 내압시험 압력 강화 - 파열압시험(제28조의2) 파열압시험 도입 - 내식시험(제29조 제1항 강화) 밸브 내식시험 추가, 소화약제 노출시험 강화, 아연 15wt% 이상 함유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도입 - 표시(제35조 제2항 신설)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